이 보도자료는 2021. 3. 5.(금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서울중앙지방검찰청 | 보 도 자 료 |
|---|---|
| 전문공보관 박세현<br>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 | 2021. 3. 5.(금) |

| 제 목 | A社 회장 특경(횡령) 등 혐의로 구속기소 |
|---|---|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(부장검사 전준철)는 「**A社 회장 횡령 등 사건**」을 수사한 결과, A社 **회장 甲**을 **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 혐의로 구속기소**하였음

❍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,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, 호텔 빌라 거주비,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,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**6개 회사에서 2,235억 원 상당을 횡령·배임**

❍ 위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**275억 원 상당**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**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**을 위반

❍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**140만 달러 상당(원화 약 16억 원)**을 **차명환전** 후, 환전한 외화 중 **80만 달러 상당(원화 약 9억 원)**을 **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**한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가 **외국환거래법 등**을 위반

## ▢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○ 피고인

- 甲 [68세, 상장회사 A社 現 회장]

※ 상장회사 B사 前 회장('00. 3.~'15. 3.), 비상장회사 C사 前 회장('04. 3.~'15. 3.)

### 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| 순번 | 공소사실 요지 / 죄명 |
|---|---|
| 1 | '09. 4. 피고인의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고인의 개인회사 **D社에 C社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**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** |
| 2 | '12. 9. C社 자금 **164억 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**하여 **C社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**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** |
| 3 | '12. 10. C社가 275억원 BW를 발행하면서, 피고인이 순번2 유상증자 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**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**의 **BW를 인수하게 함**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자본시장법위반]** |
| 4 | '12. 11. ~ '13. 7. **개인 양도소득세,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**으로 C社 자금 **116억 원 횡령**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** |
| 5 | '11. 9. ~ '15. 6.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C社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,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B社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, B社 이사회가 **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판단**하기 위해 C社 **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**한 채, **B社**로 하여금 3회에 걸쳐 **936억 원** 상당으로 **C社 유상증자에 참여**하게 함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** |
| 6 | '13. 5., '15. 4. 순번 5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B社로 하여금 2회에 걸쳐 C社의 금융권 **대출채무 300억 원**에 대해 **보증책임을 지는 내용**의 **채무부담 확약서(LOC)를 발급**하게 함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** |

| | |
|---|---|
| 7 | ’18. 8. 개인 **골프장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,**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社로 하여금 **260억 상당의 피고인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** 함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** |
| 8 | ’03. 3. ~ ’20. 11. **가족·친척** 등을 상장회사인 A社 등 **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**하여 **232억 원 상당의 급여 등 지급**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** |
| 9 | ’11. 2. ~ ’20. 9. 피고인, 아들, 친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**개인 A社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** 상당을 A, B, C社 등 3개 **회사 비용으로 처리**<br>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** |
| 10 | ’15. 1. ~ ’17. 12.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목적 위해 직원 명의로 합계 **약 16억 원(158회)을 차명 환전**<br>**[금융실명법위반]** |
| 11 | ’16. 2. ~ ’18. 1. **신고없이** 외화 합계 약 **9억 원(17회)을 소지하고 국외 출국**<br>**[외국환거래법위반]** |